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791746	
등록번호	110111-7917466	
상 호	주식회사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60,000 주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60,000 주 260,000 주	금 1,3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3,256,189 주 460,000 주	2021.09.11 변경 2021.09.17 등기
제1종우선주식 제2종우선주식	2,142,857 주 653,332 주	2021.10.29 변경 2021.10.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제1종우선주식 제2종우선주식	3,196,189 주 400,000 주 2,142,857 주 653,332 주	금 16,280,945,000 원 2021.11.29 변경 2021.11.29 등기
		금 15,980,945,000 원

###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1. 부동산

#### 1. 부동산개발사업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791746
------	--------

1.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1. 증권, 채권
  1.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준호 761223-\*\*\*\*\*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김준호 7612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 518동 201호(중계동, 주공아파트)

†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신동수 620925-\*\*\*\*\*

2022년 03월 31일 사임 2022년 04월 11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영주 960222-\*\*\*\*\*

감사 입후설 840823-\*\*\*\*\*

사내이사 양동수 760209-\*\*\*\*\*

2022년 03월 31일 취임 2022년 04월 11일 등기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양동수 760209-\*\*\*\*\*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양동수 760209-\*\*\*\*\*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릉로2길 5, 508동 802호(우면동, 서초네이처 힐아파트)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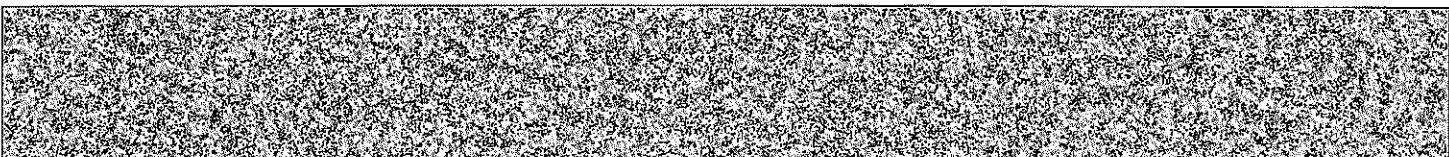
기타비상무이사 이윤형 930526-\*\*\*\*\*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06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 제1종우선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으로 구분한다.
- ② 제1종 우선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이고, 제2종은 비누적적, 참가적이며, 제1종 및 제2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다.
- ③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④ 회사는 매 결산기에 제1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연 7%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금액을 제1종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제2종 우선주식은 매 결산기에 운영 배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어느 사업연도의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4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1종 우선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 ⑥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결산기의 배당금액과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을 배당한다. 단, 보유자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제2호 중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등기번호

791746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전체 배당이익의 20%에 대하여는 제2종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은 본호에 따라 이중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율은 본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로 한다.

⑦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환금한 후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된 채무와 책임에 대한 적립을 한 이후 다음 순서로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 단, 불확정된 채무와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한다.

1.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존속기간 중 제4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미배당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중 20%는 제2종 우선주식에 분배하고, 그 외 남은 80%는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21년 10월 29일 설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 제2종우선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으로 구분한다.
- ② 제1종 우선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이고, 제2종은 비누적적, 참가적이며, 제1종 및 제2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다.
- ③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④ 회사는 매 결산기에 제1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연 7%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금액을 제1종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제2종 우선주식은 매 결산기에 운영 배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어느 사업연도의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4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1종 우선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 ⑥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결산기의 배당금액과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을 배당한다. 단, 보유자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제2호 중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전체 배당이익의 20%에 대하여는 제2종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은 본호에 따라 이중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율은 본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로 한다.
- ⑦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환금한 후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된 채무와 책임에 대한 적립을 한 이후 다음 순서로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 단, 불확정된 채무

등기번호	791746
------	--------

- 와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한다.
1.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존속기간 중 제4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미배당 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분배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중 20%는 제2종 우선주식에 분배하고, 그 외 남은 80%는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21년 10월 29일 설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 기타사항

####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설립연월일

2021년 06월 10일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1년 06월 10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2년 09월 08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퀼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